

##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\*\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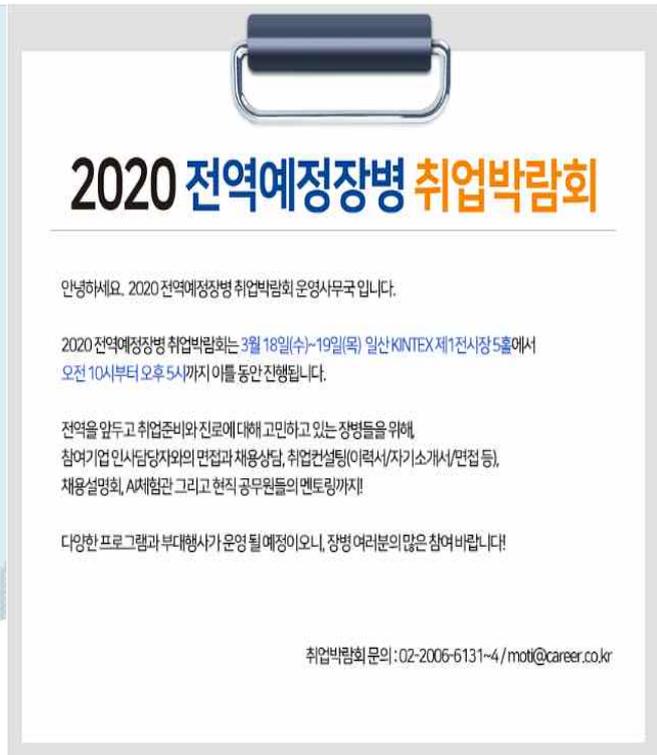
### □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



일시	2020년 2월 27일(목) ~29일(토) (3일간)		
장소	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D, E		
참가대상	박람회관심 있는 누구나		
행사구성	전국일자리 워크숍,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기타 부대행사		
주최	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· 행정안전부· 한국일보		
주관	2020 일자리 엑스포 조직위원회· 에코마이스(주)		
기업신청기간	박람회사무국문의	개인신청기간	사전접수및 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2-6000-4278	FAX	02-6455-0953
담당자		E-MAIL	jobexpo@ecomice.com
사이트(출처)	<a href="http://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.com/index.php">http://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.com/index.php</a>		

\*자료출처 : <http://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.com/index.php>

□ 2020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



일시	2020년 3월 18일(수)~19일(목) 10:00 ~ 17:00		
장소	킨텍스 제1전시장 5홀		
참가대상	취업을 희망하는 군 전역예정장병		
행사구성	채용면접 및 상담, 1:1 맞춤 취업컨설팅, AI 현장매칭,		
주최	대한민국 국방부		
주관	국방전직교육원		
기업신청기간	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	개인신청기간	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2-2006-6131	FAX	—
담당자		E-MAIL	moti@career.co.kr
사이트(출처)	http://moti.career.co.kr/default.asp		

\*자료출처 : <http://moti.career.co.kr/default.asp>



##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- 최대 180일,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-

-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.

\* '19년 719억원 중 669억원 집행(93%), '20.1월 기준 351억원 중 36억원 집행(10.5%)

-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(월 최대 198만원)까지 지원하게 된다.

### < 참고 1 :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>

- ▶ (목적) 매출액,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

\* 지원수준: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- ▶ (지원요건) 재고량 50%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\* 고용유지지원제도 세부 내용<붙임 2>

-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

-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“조업(부분)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”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\* '20.1.29.~2.7.(10일) 신종 CV 관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사업장 112개소(제조업 55개소, 여행업 32개소, 기타 25개소)

< 참고 2 :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>

- ▶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(부분조업)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,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 시행('20.1.29)
- \*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」 해당 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\*\*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부내용 <붙임 1>
- \*\*\*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<붙임 3>

□ '고용유지지원'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(THAAD)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\*한 바 있으며,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.

\* (메르스 피해 기업) 417개 기업, 33억 지원, (사드 피해 기업) 153개 기업, 44억

-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"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,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"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(☎044-202-7223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\*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  - \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 (특별 지원)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  - \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원대상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\* 중 「고용보험법시행규칙」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 - \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 등) 등
  - 또한,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

□ 추진기간 : '20.1.29.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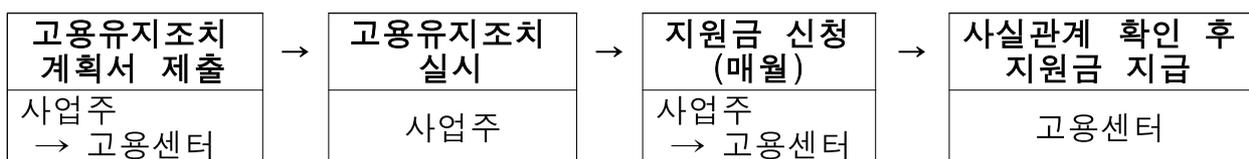
□ 지원조건

-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  - \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□ 구체적 지원내용

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  - \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▲우선지원대상기업 2/3, ▲그 외 1/2

□ 지원(신청)절차



□ 사업목적

- 매출액·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훈련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

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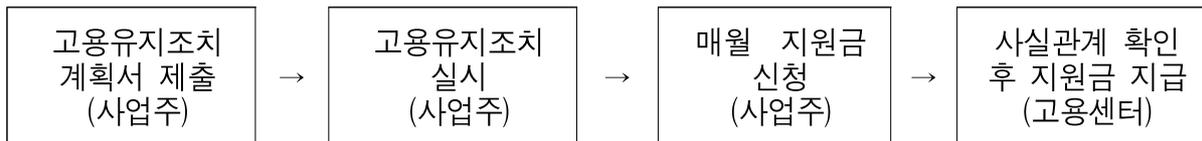
←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

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
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%이상 감소
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
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
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
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
8. 당해 업종·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

□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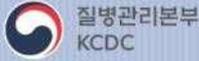
사업명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을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□ 사업집행절차



	고용유지지원금	⇒	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
계획 신고	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: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* 본사,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"사업"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	⇒	현행과 같음
지원 대상	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(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요건 등)	⇒	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(부분)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*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
지원 수준	사업주가 휴업,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 * 단,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% 이상인 경우 2/3 지원	⇒	현행과 같음
지원 한도	1일 6.6만원(연간 최대 180일)	⇒	현행과 같음
지원 요건	(휴업)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*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% 이상 단축해야 가능 *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<b>&lt;예시&gt;</b> *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(3월)의 피보험자수(50명)와 기준기간(9~12월)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.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'19년 9월 80명, 10월 70명,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*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(휴일근로)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,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만 포함됨, 일시적,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는 포함 안됨  (휴직)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	⇒	현행과 같음

#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



##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

### 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  
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땐  
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 
반드시 마스크 착용  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선별진료소\* (의료기관) 방문 시  
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
\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  
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+120, 1339 문의



감염병이 의심될 땐  
관할보건소 또는 1339,  
지역번호+120 상담

###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  
접촉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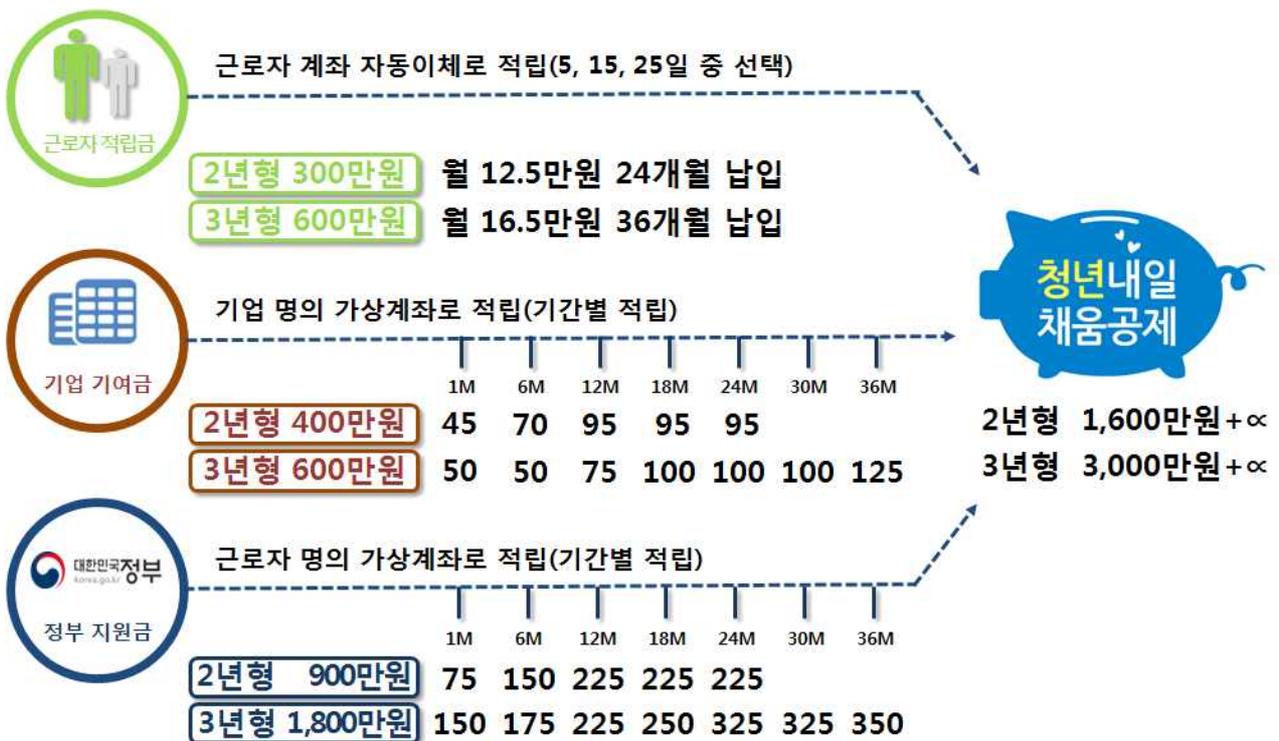
·기침시 마스크 착용  
·손씻기, 기침예절 등  
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
·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 
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 
지역번호+120 상담

##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'16.7월)
 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   - \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\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 “ )
 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 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**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**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#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##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</li> <li>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</li> <li>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</li> <li>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</li> <li>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</li> </ul>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</li> <li>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</li> <li>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</li> <li>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</li> </ul>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용유지지원금,</li> <li>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</li> </ul>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</li> <li>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</li> </ul>

## 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## 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## 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 창 장려 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	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고 안 장려 금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	위라벨일자리 장려금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휴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고 유 지 원 금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 년 · 고 령 자 고 용 지 원 금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